

전문가들이 바라본 언론조정·중재제도 30년

김창숙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 언론학 박사

I. 서론



2011년은 우리나라에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1981년에 도입된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보도 환경의 변화와 인격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성장에 발맞추어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 언론중재제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대체적 언론분쟁해결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사회적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았고, 근거 법률이 된 언론기본법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사회적인식 또한 좋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중재제도가 운영되면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재판을 하기 어려웠던 개인이나 단체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게 되고, 언론사들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언론중재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갔다. 이런 인식의 증대로 인해 1987년 언론기본법은 폐지되었지만 방송법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언론중재제도가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던 중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한 단일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05년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었다. 이런 역사적 전개를 봤을 때,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인격권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의 오랜 숙고의 결과이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언론보도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발전해 왔다.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를 넘어 언론사닷컴, IPTV, 포털사이트를 언론조정·중재 대상매체에 포함시킨 것은 이들 매체들이 언론보도의 생산과 확산에 있어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새로운 언론환경변화를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의 변화가 사회적 요구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해도 개정을 둘러싸고 형성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았다. 더구나 언론중재제도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제도이고, 다른 국가들도 새로운 언론환경에 맞는 법제들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할만한 국내외 법률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법 제정 이후에도 법 자체의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법이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도출되곤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언론조정·중재제도 운영 30년을 맞이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한 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수준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소수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인 만큼 향후에 언론중재법 개정 시 주요하게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2009년 일부 개정을 통해 현재의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졌다. 2005년과 2009년 당시 사회적으로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들이 2009년 개정안에서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정착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우리는 앞으로도 한참동안 겪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2005년과 2009년 언론 중재법의 주요 내용과 그것을 둘러싼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주요 쟁점들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우선 2005년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첫째, 우리나라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획기적인 질적 변화로서 실질적인 '중재' 기능이 도입되었다. 물론 2005년 이전에도 '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자와 언론사사이의 분쟁을 언론중재위가 객관적, 법률적 입장에서 당사자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 하는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언론중재법 24조 ①에서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25조 ①에서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명시함으로써 '중재' 기능이 도입되어 진정한 의미의 언론중재시대가 도래하였다.

둘째, 피해구제 방법으로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되었던 것도 획기적인 변화 중 하나였다. 손해배상을 언론조정·중재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날카롭게 대립되기도 하였다. 찬성론 입장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반면, 반대측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 언론보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손해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과실 상계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심리 기간(최장 21일)과 심리 방식에 있어 제한이 있는 중재부에서 해결하기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었다(양삼승, 2005, p. 7).

또한, 윤경(2005, p. 31)은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중재)신청의 경우 정정보도청구처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지,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당해 업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민사소

“2009년 개정안이 2005년 단일법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한 것처럼 현재의 언론중재법도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 지속적으로 법을 정제해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정정보도청구와 달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신청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별도의 구성요건이나 청구권자의 범위를 갖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법원(法源)은 언론중재법 제4절(소송) 제30조(손해의 배상)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민법에 근거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셋째, 인터넷 신문이 언론조정·중재 대상매체에 포함됨으로써 전통적인 매스미디어가 아닌 뉴미디어가 언론조정·중재제도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불명확하고 미비한 범규로 인해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신문이 언론으로서의 지위와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면서 파생되는 법체계의 문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삭제 및 반박제재청구제도와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중재제도가 법체계적으로 어떠한 관련성이 있고, 어떻게 상호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황성기, 2005, pp. 7-8). 또한, 인터넷 신문은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인터넷 방송은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논리의 부재와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넷째,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반론보도의 신청기간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언론중재법 제14

조①, 추후보도 역시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언론보도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를 3개월로 늘린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더 많이 제공한 것이다.

다섯째, 언론중재법 제32조 ①에서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서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하여 종전보다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으니(제32조 ②), 2009년 개정안에서 이 내용은 폐지되었다.

한편, 2009년에는 종전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인터넷 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이 실시되었다(김명전, 2010, p. 481).

개정안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직접 언론보도를 생산하지 않고 매개만 하는 포털사이트를 대상 매체에 포함한 것이었다. 기존에는 ‘언론사의 언론보도’에 대해 조정·중재를 했던 것을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는 기존 매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미디어이기 때문에 법 규정 마련이나 적용에 있어 많은 혼란이 존재한다. 우선 포털사이트는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와 달리 기사제공언론사로부터 뉴스를 전달받아 뉴스를 내보내는 매개체이므로 직접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뉴스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또한, 기사제공 언론사의 언론보도를 매개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여 규격화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기존 매체들이 시공간적인 제약 가진 반면 포털사이트는 무한정 페이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선형적인 구조의 기존 매스 미디어와는 달리 하이퍼 텍스트 구조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매체에 적용했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방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과 법규정상 미비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에 청구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기사제공언론사도 뉴스서비스 사업자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나(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구내용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벌칙이나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여상원(2009)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해당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다는 알림문구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이를 실행하지 않아도 벌칙이나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 즉, 이행과 관련된 규정은 있지만, 불이행시 규정이 없어 불이행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기사의 삭제 등의 조치를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언론중재법에는 기사삭제권이 피해구제방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언론중재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시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지적되기도 한다. 언론중재법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만들어가는 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2009년 개정안이 2005년 단일법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한 것처럼 현재의 언론중재법도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 지속적으로 법을 정제해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문적인 분야인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면대면 인터뷰(전문가(a)와(e)와 서면 인터뷰(전문가(b), (c), (d))를 병행하였다. 면대면 인터뷰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구술로 응답한 내용을 녹취하였으며, 서면 인터뷰는 사전 허락을 구한 뒤, 이메일을 통해 질문지를 발송한 후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여 2주일 후 이메일로 되돌려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그동안의 경력과 연구실적, 저서 등을 고려해서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문가들로 선정하였으며, 법조인, 법학교수, 언론학교수를 고르게 포함되도록 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대상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a)
-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b)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c)
-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d)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e)

Ⅳ.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문가 인터뷰의 질문은 크게 6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① 언론조정·중재제도 30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② 언론조정·중재의 피해구제방법(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에 대한 의견, ③ 정권고에 대한 의견, ④ 포털사이트에 대한 의견, ⑤ 향후 뉴미디어나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견, ⑥ 언론조정·중재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언론중재법 개정 시 주요 개선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질문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언론조정·중재제도 운영 30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우선 언론조정·중재제도가 30년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거두었던 성과 혹은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1981년 출범 당시 정치적 배정이나 근거 법률이 되었던 언론기본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으나 30년간의 노력으로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언론들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언론이 덕성스러워지고 성숙해지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과정에 참여해 본 언론인들의 97.7%가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63.5%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언론중재위원회, 2010).

80년 언론기본법이 근거 법률이 돼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생겨났는데, 언론기본법 자체는 언론통폐합의 근거 법률이었고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명예를 안고 있는 법률이다.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출범 자체가 언론의 자유와는 배치되는 명예를 안고 출발했었다. 하지만 30년 동안 여러 차례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을 거치고, 연구 가능과 좋은 인적구성을 갖추고 노력을 한 결과, 현재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는 기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언론사 측에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맡겼을 때 말이 더 잘 통하는 기구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30년을 지나오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진명예를 이제는 벗었다고 생각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을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갖게 된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자체적인 노력과 사업의 성과라고 생각한다.(a)

초기의 언론중재위원회는 태생 때부터 정치적인 안목에서 오해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백안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의 일반적인 평가는 성숙한 언론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는 것이 언론

계 내외에서 받는 평가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부정적인 측면의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백안시했는데 지금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를 향한”, 즉 덕성스런 언론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한다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30년간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나 생각한다. (e)

중립적 기관으로 그 중요성과 존재감을 언론사와 피해자 양측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d)

또한, 언론중재제도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격권 침해를 입은 개인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도 있었다. 특히, 2005년 단일법 제정이나 2009년 개정 등 법률적 개선을 통해 피해배상제도가 강화되고,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대응하여 제도의 외형을 완성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되어 30년이 흐르면서 제4부의 권력으로 부를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언론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상당한 보장이 이루어졌다. (c)

언론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제도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라 피해보상제도가 강화되는 등 점에서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d)

중재위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 같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매년 피해구제 청구건수가 늘고 있고, 구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중재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가 단일법을 만들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매체가 자꾸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체해야겠다는 염원들이 모여져 2005년 단일법 제정, 2009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제도의 테두리는 완성됐다는 점에서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a)

한편, 그동안 언론조정·중재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없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조정·중재 환경의 열악성, 중재위원들의 전문성 부재, 포털이나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과도기를 넘어 좋은 커뮤니케이션 풍토로 정착되기까지 언론중재위원회가 전체적인 언론 풍토를 바꾸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언론 조정·중재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분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

중재위원들의 전문성이 들쭉날쭉하다. 선발과정에 투명성과 전문성 검증이 없다. 신방과 교수라 하더라도 저널리즘 전공을 우선해야 한다. 지역별, 중재부별 편차도 큰 편이고, 굳이 여성대표, 시민단체 대표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다. 상대적으로 전직 언론인들이 너무 많은 편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리고 중재위원을 2회 이상 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은 전문성과 시명감을 가진 위원들마저 그만두게 하는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포털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너무 앞서가는 힘들어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d)

총론적으로 말하자면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긍정적이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아직 도입되지 않았음으로 야기되는 부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또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b)

최근에 와서 소셜미디어가 기존 미디어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확장시키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즉,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예전에는 매스였다면 지금은 point to point로 바뀌고 있어서 중재가 필요한 양상이나 중재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외형적 성장의 바탕을 마련했다면 지금부터는 속살을 다지는 상숙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장에서 상숙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내가 가지는 30년에 대한 평가다.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이나 양태가 달라져 소셜

미디어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촉발시키기도 했지만 문제는 그런 것들이 사회 통합과 공동선 구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은 소셜미디어 환경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언론자유를 향유하는 동시에 언론이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 언론중재위원회가 절차적인 부분보다 전체적인 언론 풍토가 바뀔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

2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피해구제방법에 대한 의견

현재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피해구제 방법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4가지 형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 및 규정의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없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전체적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에 대한 의견은 많지 않았으나 정정보도에 대해서는 남발할 경우 자칫 언론의 자율성 침해 및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반면, 반론보도는 저널리즘의 가치인 공정성과 균형성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정정보도보다 더 비중있게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더 나아가 전문가(b)는 프랑스의 예를 들며 반론보도를 '사실' 뿐만 아니라 무기대등의 원칙면에서 '의견'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전문가(c)는 반론보도나 추후보도가 결국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차원에서 구제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반론이나 추후보도의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해구제방법은 현 상태로는 상당히 적정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지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정정보도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처분 절차에 의한 정정보도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위원결정도 있었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파악해서 진실여부를 묻지 않는 반론에 치중한 반론보도를 조금 더 중시하는 쪽으로 피해구제 방법이 이끌어져 가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a)

반론보도의 경우 사실적 진술에 대한 반론보도만 허용됨으로 인하여 의견 진술에 대한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프랑스처럼 의견에 대한 반론권도 실제법으로 규정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어차피 언론이란 '사실'과 '사실'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언론에 대해 '사실'과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상 '무기대등'의 차원에서 '사실'에 대한 반론 이외에 '의견'에 대한 반론도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b)

정정보도의 경우에 정말로 그만 것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할 수 있었지만 뉴스라는 것이 순수한 사실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중에 기사가 될 만한 것을 택하는 형식에 의해 기사가 만들어지므로 이미 평가가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사실과의 의견을 완벽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명명백백한 것 외에 정정보도를 자꾸 쓰게 되면 위축효과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걱정스럽다.¹⁾ 그래서 정정보도가 필요하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고 엄격한 기제를 통해서 정정보도로 인한 구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저널리즘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반론보도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일방의 입장을 쪽 제시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이에 대해, 한편' 하면서 반대편 입장은 조금 싸늘한 경우가

1) '사실보도' 혹은 '사실적 주장'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의 함축적인 범위가 매우 넓어 '사실'이나 '진실'을 평가하는 것'은 각분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과학에서의 진실은 검증만 되면 되고, 법에서의 진실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저널리즘은 특성상 대체로 '그당시에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사실'을 진실(truth)로 본다. 완벽하게 입증되고 확인된 것만 가지고 기사를 쓰려면 저널리즘이 가져야 하는 시의성과 적절성 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완벽하지 않아도 그당시에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사실을 기사화할 수 있어야 사회적 담론도 이끌어내고 비판도 할 수 있고, 비밀에 감춰진 것을 공개할 수 있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제도에서 법리적인 안목에서 증거가 있느냐 혹은 확인했느냐는 아주 엄격한 잣대로 하더라도 언론의 자율권이나 자조권이 광장히 위축될 수 있을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에너지를 환경이 되는 언론의 자유의 위축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전문가 (a)의 보충 설명

“반론보도나 추후보도가 결국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 라면 실질적인 차원에서 구제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반론이나 추후보도의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많이 있다. 즉, 기사의톤을 정해놓고 구색 맞추기식인데, 반대편의 이야기를 확대하고 충실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반론보도를 언론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저널리즘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야만 공정성이나 균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오히려 덕성스런 언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론보도가 좋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반론보도의 크기, 위치, 시기 등을 원기사 크기만큼은 아니더라도 눈에 띄게 하여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추후보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사건의 발생은 크게 보도하고 종결은 조그맣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추후보도가 그 사람의 훼손된 행복추구권이나 개인권을 회복시키는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그것도 결국 언론이 할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추후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추후보도의 양식에 대해서는 요식행위나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중재위에서도 조사를 통해 어떤 방식의 피해 구제가 실제로 효과적인가를 파악한 후에 기이도인 등을 만들면 어떨겠나 생각한다. 기령 오늘 발생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린다면, 사람들은 노리에서 모두 지워졌을 지 모르지만, 본인은 몇 년 동안 그 피해를 계속 당한 상태인데 그게 한두 줄의 기사로 구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구제가 목적이 라면 실제적인 구제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크기, 시기 등을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e)

손해배상제도는 2005년에 새롭게 피해구제 방법에 포함되었다.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실효성이나 법 해석문제 등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인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구제 방법보다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전

문가(a), (b), (c), (d)는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증액하거나(b) 손해배상액의 산출의 어려움을 개선하거나(d), 보다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 제도를 개선할 것(c) 등을 언급하였다. 반면 전문가(e)는 언론보도와 손해배상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고 실효성도 많지 않아 손해배상은 민사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에 치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손해배상의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액수가 피해보상에 이르기에는 적은 금액이라는 것, 그로 인하여 3배 배상제도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와 관련된 것인 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언론중재법이 일반불법행위법(민법 제750조 이하)에 대한 특별불법행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3배 배상제도의 선도적 도입이 다른 불법행위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현재와 같은 언론환경에서 과거보다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b)

‘손해배상’이란 용어에는 강제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만 있는 것이 상당히 어색하긴 했다. 언론사에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는 다른 형태의 구제방법도 있었지만 보상문제가 따라 나오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이나 중재 권한을 2005년도에 집어넣은 것은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다. (a)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 인격권의 침해,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했다. 손해배상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 사건의 경우가 아니면 개인이 언론기관을 상대로 손해를 보상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는 현실이다. 손해를 손쉽게 보상 받을 수 있는 절차적인 제도의 보완과 함께 다양한 피해구제방

성과는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 현실화로 피해자들의 편익과 실질적 불만해소에 큰 도움을 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개선사항이라면, 손해배상제도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수 있는 기초적인 계산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어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손해배상제도는 보다 활성화, 체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d)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처음 도입 시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언론보도가 그 사람의 재산상에 피해를 줬는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어느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기사로 인해 회사가 망했다 혹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 에 대해 액수를 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단 언론위일만 많아지고 실효성도 없을 것 같다. 상징적으로는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 오히려 본론보도나 추후 보도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들이 피해를 구제 받았다고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하고 생각한다. (e)

3. 시정권고에 대한 의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32조 ①). 이와 관련하여 시정권고가 성과가 있다고 보는지, 운영 및 규정에서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²⁾.

이에 대해 전문가(e)는 시정권고가 언론사에게 일종의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예방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전문가(c)와(d)는 시정권고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문가(c)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 보도내용의 법익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던 종래의 규정이 삭제된 것이 개인의 언론피해에 대한 방어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전문가(d) 역시 시정권고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언론들이 시정권고를 무시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언론사에게 시정권고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하여 시정권고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예전부터 시정권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시정권고는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느슨하고, 수용 여부를 언론이 결정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는 사람의 경우 시정권고로 인해 간접적으로나마 피해구제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언론에게는 '이런 보도는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부지불식 중에 들어가서 윤리기준, 행동양식이 되어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시정권고를 너무 유목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시정권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주제(theme),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언론이 흔히 저지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정해서 일정기간 동안 그것을 집중적으로 시정권고한다면 언론에게 스스로를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정권고 여부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시정권고를 하는가에 대한 논리나 근거를 함께 제시해줌으로써 언론인들이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자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방법이 보다 구체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e)

가정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언

2) 전문가(a)는 응답하지 않음

론중재위원회가 언론 보도내용의 법익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던 종래의 규정(언론중재법 제22조제2항)을 삭제하였다. 그 이유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개인의 언론피해에 대한 방어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 시정권고가 있었다 해도 실효성있는 시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은 보완·강화되어야 할 사항이다. (c)

시정권고는 그야말로 권고사항이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너무 신중하게 처리하고 상대적으로 언론사들은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시정권고의 의미가 향후 유사사건에 대한 경계를 요구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언론사들은 이런 시정권고에 대해 별 부담이나 윤리적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서 향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이를 보도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 크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처럼 해당 언론사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의미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고뇌에 찬 시정권고가 간단하게 무시되는 현실에서 그것이 무슨 효용성을 갖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d)

한편, 전문가(b)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발명한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언론중재위원회가 함으로써 처분발령청이 재심을 하게 되는 절차적 측면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언론중재법상의 시정권고는 그 명칭이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로서는 권리의무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법은 언론중재위가 발명한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언론중재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 역시 언론중재위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처분발령청이 재심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 절차적 측면에서 우월적 소지가 많다고 보여진다. 물론 시정권고는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하고, 재심은 언론중재위에서 함으로써 조직적으로는 차별을 둘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시정권고 자체가 언

론중재위원장 이름으로 발령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정권고소 위원회는 언론중재위 내부의 조직법적 문제에 불과하므로 처분발령청에 의한 재심 판단으로 인한 절차법적 하자는 그대로 남는 것으로 보인다. (b)

4. 포털사이트에 대한 의견

2009년 언론중재법이 개정되면서 포털사이트가 새롭게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직접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 포털을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a)는 포털사이트가 언론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고 포털사이트가 가판대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편집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의 책임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포털사이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2009년 4월에 포털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 선고 이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또한 최근에는 미국처럼 계약에 기반하여 언론사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가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문가(b)와(d)도 포털이 가지는 기능적인 측면과 영향력을 강조하며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타당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전문가(c)는 포털사이트가 표현의 자유 확대나 정보공유 등의 긍정적인 기능으로 제대로 자리잡을 때까지 기다리되, 반론권 등의 피해구제 방법이나 교육을 통해서 포털사이트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해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포털사이트가 언론이냐 아니냐 하는 논의는 무의미하다. 그 이유는 지금은 크게 신문과 방송으로 나뉘서 매체별로 규제를 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형태인데, 포털사이트는 언론형성 기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취재를 해서 뉴스를 생산해내는 곳은 아니다. 유통을 하는 곳, 이를테면 가판대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가판대 역할을 하면서 어떤 양태를 보였느냐 하면, 제목에 손을 대고 기사를 취사선택했다. 메인에 무엇을 내보낼지

를 취사선택을 하고 기능적으로 편집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언론이나 아니냐하는 논쟁이 있었지만 2009년 4월에 포털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선고가 되고 나서 포털사업자들은 유연하게 대처해왔다. 네이버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 뉴스캐스터 형태로 무색투명하게 자신들은 가판대 역할만 하겠다고 해서 유통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있다. 기능적으로 책임을 지느냐 안지느냐는 법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이것을 대상의 측면에서 언론이나 아니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미국의 경우 OSP(Online Service Provider)³⁾가 책임을 지느냐 안지느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본다. 그 이유가 notice and take down(인지 후 삭제조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절차에 따라서 법이 강제된 규칙이 정한 역할만 하면 다 면책 된다. 그런 규정을 정하고 움직이는 곳에서는 포털사업자가 언론이나 아니냐는 굉장히 무의미한 논쟁이다. 그리고 또 우리와 상황이 다른 것은 우리는 계약에 의존하지 않거나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따지지 않고, 우선은 유통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일단 뉴스캐스터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거기에 비하면 미국 등은 계약을 맺어 언론사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포털사업자 문제는 2009년 4월에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영업형태, 게재나 게시행태가 많이 바뀔으로써 정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형태의 새로운 분쟁행태가 생길지는 감히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a)

개인적으로 2007년부터 포털을 전통적 개념으로서의 언론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언론으로 포섭함으로써 언론중재법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비록 포털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언론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기능적 측면에서의 언론성을 인정하고 포털을 언론중재법에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b)

두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포함돼야 하지만만 시지탄(晩時之勤)⁴⁾이 있다. 현재 포털은 언론사들보다 더 많은 광고단기를 부르며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뉴스제작 언론사보다 덜한 위치에 있다. (d)

포털이 중재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증가하여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액세스권, 정보공유 등이 증가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이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누군가 “수단이나 기회가 확대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아주 저질의 공약수적인 메시지가 범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요즘 그런 것 같다. 굉장히 선정적이고 철라적이고 소비적인 것들이 범람하고 있어서 외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빈도나 채널의 양태들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여과기능도 없고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포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포털 종사자들이 무엇이 법에 저촉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각 신문의 것을 퍼오기도 하고, 언론사닷컴은 자신들의 신문 중에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퍼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포털도 조회수, 방문자수, 클릭수를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꽤 많은 부작용을 나타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신문이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성을 사용해도 댓글에서 실명이나 나와 버린다. 이렇게 기존 미디어에서 애를 써서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을 보호해주려고 애를 써도 포털에서 깨질 수 있는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별로 없다. 그렇다고 포털에게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 일단 이용자들이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제 자리를 찾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 자리를 찾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포털사이트에게 여기까지는 안된다 는 넓은 울타리를 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명백한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삭제를 한다든지 반론권을 보장해준다든지, 포털

3)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라고도 함

4) 시기에 늦었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포털사이트가 표현의 자유 확대나 정보공유 등의 긍정적인 기능으로 제대로 자리잡을 때까지 기다리되, 반론권 등의 피해구제 방법이나 교육을 통해서 포털사이트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해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사이트의 운영자를 통해 교육을 시켜서 나름대로 거르고 선별해서 정말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유용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지. 초기니까 규율(discipline)을 가르쳐야 한다. (c)

포털사이트와 관련된 언론조정·중재제도나 규정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전문가 (c)는 예방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교육적인 차원에서 포털사이트에 대한 초기 대응을 좀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삭제되지 않는 인터넷 뉴스 때문에 죄값을 치른 피해자가 이중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인터넷 뉴스를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c)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규정과 제도 마련을, 전문가 (d)는 포털에 대해 견제, 감시제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적 책임 강화를 제안하였다.

전문가 (b)는 타법률과의 관계 측면에서 포털사이트가 언론중재법상 규율의 대상임과 동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중 규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실무적인 측면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삭제나 반론보도와 같은 초기의 대응방안을 조금 엄중하고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엄격하고 엄정해야지 교육제도로써 정착이 되므로 느슨하게 해서 안되고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을 엄격하게 하고, 기사를 삭제, 반론, 소멸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인터넷에 올라가면 삭제가 되더라도 완벽하게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설혹 어떤 사

람이 잘못을 해서 응징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관련 기사가 또 나와서 이중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완벽하게 소멸시키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견 언급위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결국은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재는 손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주는 것이지만, 징벌적인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예방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포털사이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정답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가려면 대가를 치뤄야 하니까 좀 인내를 가지고 참자 하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의도일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것이 제대로 행사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포털사이트에 대한 것은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동시에 법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본다. (e)

뉴미디어 시대에 진입하면서 기존의 방송과 신문 등 전통적인 매체보다 그 숫자나 접근성, 전파력에서 인터넷 등 포털사이트 방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포털사이트는 그 영향력과 전파력에서는 강력하지만 콘텐츠의 사실과 진실성 등 검증 기능은 취약하다. 언론중재법의 규정은 최소한의 피해구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당연히 효과는 있지만, 매체의 확산 추세를 비춰볼 때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규정과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c)

포털의 영향력과 취사선택하는 편집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개 언론사와 같거나 더한 법적 책임감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포털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인터넷 미디어 강자로 군림하는 포털에 대해 견제, 감시제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d)

포털은 언론중재법상 규율의 대상임과 동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중 규제를 받을 염려가 있는 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그 개정 방향 또는 개정 이전에 실무적 측면에서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체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b)

5. 뉴미디어나 소셜미디어의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 여부에

언론중재법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인 방송매체와 신문매체 외에 언론사닷컴, IPTV, 포털사이트 등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기존의 형식적인 매체 구분에서 벗어나 매체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인격권 침해를 보다 광범위하게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새롭게 등장할 미디어나 이미 많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등에서 생산하고 유통한 언론보도로 인해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매체도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느냐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d)는 소셜미디어가 향후 기존 미디어를 대체할 만큼 영향력과 전파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포함시킬 때에는 새로운 미디어의 ① 의도성 ② 범위만 정도 여부 ③ 클릭수 혹은 전파력/영향력 ④ 공익성 및 공공성 ⑤ 사후 조치의 책임성 ⑥ 피해자에 대한 배려 정도 등 엄격한 기준에 두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전문가(b)는 편집기능(editorial function)의 여부를 언론이나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다. 따라서 뉴미디어나 소셜미디어가 편집기능을 행사하지 않을 시에는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포함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향후 소셜미디어는 기성미디어 못지않은 영향력과 전파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기성미디어를 대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언론중재법도 적응하는 차원에서 이를 법체제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기성언론과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요인은 1) 의도성 2) 범위만 정도 여부 3) 클릭수 혹은 전파력/영향력 4) 공익성 및 공공성 5) 사후 조치의 책임성 6) 피해자에 대한 배려 정도 등(d)

뉴미디어나 소셜미디어를 언론으로 사료할지 여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편집기능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⁵⁾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석해야만 사회적 영향력(뉴미디어나 소셜미디어로 인한 인격권 침해)을 언론중재법으로 규율하는데 있어서 언론학적, 법학적 논거가 마련될 수 있다. 다만 뉴미디어나 소셜미디어를 언론중재법에서 언론으로, 또는 준언론으로 규제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는 편집기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뉴미디어나 소셜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편집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에 규정하는 것은 자칫 언론이 아닌 것까지도 언론으로 개념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뉴미디어나 소셜미디어는 언론중재법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한 인격권 침해 구제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편집기능이 없음에도 언론중재법으로 포섭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리 구제가 언론중재법에 비해 길어질 수도 있는 등 언론중재법에 비해 미비한 규정이 존재한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언론중재법 제17조의2 제항과 같은

5) 포털이 언론중재법(형식적으로는 언론이 아니지만 언론중재법에 규정됨으로써)에 실질적으로는 준언론으로 개념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포털이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것과 관련해서 그 이면에는 사회적 측면(포털의 영향력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언론학적 관점 역시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관점이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포털이 언론으로 규정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전통적 언론 개념(뉴스를 '취재', '편집', '배포'라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만 언론으로 사료하던)에서 벗어나 슈메이커(Pamera Shoemaker)의 게이트 키퍼링 확장 모델을 응용하여(전통적 언론에서의 사전적/폐쇄적 게이트 키퍼링만 아니라) 포털과 같이 사후적이고 느슨한 게이트 키퍼링까지 언론으로 포괄하면서 언론의 본질을 편집(Edit)으로 보았다더라면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프콤(Ofcom)이 방송과 통신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던 편집기능과도 일관되지 않나 싶다 - 전문가(b)의 추가 설명.

“기본적으로 게마인사프트적인 성격이 있는 소셜미디어에 대해 규제보다는 사람들이 공동성이나 국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구를 통해 기여해야 한다”

내용(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언론이 아닌 정보통신망서비스의 경우에도 이용자들(users)에게 경고적 기능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b)

한편, 전문가(a)는 아직까지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에 언론 혹은 언론기능이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답을 유보하였다. 다만, 현재의 트위터와 같이 자신들의 짧은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문가(e)는 뉴미디어나 소셜미디어가 양질의 콘텐츠 생산이나 정부의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본적으로 게마인사프트적인 성격이 있는 소셜미디어에 대해 규제보다는 사람들이 공동성이나 국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구를 통해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프랑스 혁명 때도 지금의 SNS의 형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단계에 자신의 찝막한 의사를 적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리면 사람들이 그걸 주워서 보고 그 사람한테 찬성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곤 했다. 지금 중국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규제 대상으로 넣을지 말지 하는 질문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 언론이나 줄기를 이루는 언론이나 언론기능을 하는 데 들어오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쉽게 얘기하기 어렵다. 현재 단계로서는 자기의 찝막한 생각을 퍼트리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실이나 허위나 여부를 놓고 따지기 전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a)

인터넷, 블로그, 트위터가 기존 매체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걸 정보사회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에 들어가 보면 동호인이나 전문가들이 보내는 좋은 메시지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 또한 많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았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위키리스크를 통해 국가 기밀이 새어나간 사건을 두고 일부에서는 큰일났다고 그러는데, 내 생각엔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곤혹을 치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정부는 까리끼리가 아닌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받고, 비평받는 바탕 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는 상하이 스캔들을 보더라도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현재로서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아무도 모르는 데 있다. 이를 자유주의 사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유방임적으로 내버려둬야 그러면 진리가 가린다'는 믿음을 고수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를 적당한 선에서 사람들에게 공동선이나 국가 통합을 보존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중재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양이 너무 많고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특히 소셜미디어가 개인과 개인, 동호인과 동호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게마인사프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중재제도가 그리 실효성이 있을까 의구심도 든다. 그러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상에 대해 좀더 지켜보면서, 중재위원회는 소셜미디어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 (e)

6.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이나 향후 개정시 주요 개선점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이나 향후 언론중재법 개정시 주요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문가들은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중재위원 운영과 전문성에 대한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문가(c)는 중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근 중재위원제의 도입과 전문 인력의 확충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d)도 중재위원의 연임 횟수를 늘리거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평가제도 도입, 중재위원 선임의 투명성 등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a)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성숙한 언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 좀더 언론을 이해하는 중재위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중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있는 중재위원들이 보다 오랜 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언론중재법이 실효성을 높이려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비상임 중재위원체제에서는 절대적인 인력도 부족하지만 심리의 전문성에서도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근 중재위원제 도입과 전문 인력의 확충이 중요하다. 매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SNS의 확산에 따른 개인의 피해범위는 갈수록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d)

언론중재제도는 시대와 함께 발전해왔으며 그 전문성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와 같이 기계적으로 2회 임기로 모두 내보내는 식을 지양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제안해본다. ① 임기는 2회에서 3회로 연임을 가능하도록 한다. ② 각 위원장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위원들에 대해 전문성과 성실성 등을 심사하여 평가를 하도록 한다. 이를 향후 연임 여부의 평가지침으로 삼는다. 평가는 어느 조직이나 필요하며 이는 조직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③ 중재위원들의 선임이 좀 더 투명하고 전문성을 우대 쪽으로 강조됐으면 좋겠다. ④ 중재부별로 필수 전문 중재위원들을 배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언론사들로부터 배척당해서도 안되고 피해자들로부터 반발에 직면해서도 곤란하다. (d)

성숙한 언론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 우선 스스로 '중재위원회가 필요 없는 언론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사건에 대해 중재나 조정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각 사건에 대한 피해구제는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전체 언론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등을 낼 때 분명하게 언론판결, 신청인, 그리고 피해구제의 변화 등을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보고서,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언론풍토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중재부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걸 알려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재부장을 2년 맡는데, 중재부장이 바뀌면 이전 중재부장이 하던 것과 단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오신 분들의 저널리스트한 안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나치게 법의 잣대로 보게 되면 자칫 언론이 거부감을 가지거나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특성과 개인의 법익보호라는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인 중재부장을 여러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전문 의식이 있는 사람을 좀더 오랜 동안 하는 게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리고 전문 의원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법적인 측면과 언론적인 측면을 먼저 숙지한 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피해구제 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a)

한편, 전문가 (b)는 손해배상액의 증액이나 재심청구 절차와 관련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전문가 (a)는 향후 새로운 매체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기구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언론중재법상의 절차에 의하면, 이의 신청만으로도 법원에 대한 소제기 효과가 있고, 소가 2초만 100원임에도 단독 판사가 아니라 합의부에 의해 재판을 받도록 하는 등 절차법적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규정들을 가지고 있고, 이는 언론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라는 언론중재법의 법이념에 충실하고자 신속하면서도 신중한 사법적 판단을 받게 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실정법에 반영된 것으로 현명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절차상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실제법상으로는 앞서 살펴본 손해배상액의 증액 문제를 끝낼 수 있고, 절차상으로는 재심 청구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 운영에 대해 말하자면 조정이나 중재가 언론사업자들에게 다소 유리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더욱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 (b)

30년 동안 참 훌륭하게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떤 기구로 변모를 해야 할지, 어떤 기능을 하면

서 남아있어야 할 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 여러 매체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벌써 빠르게 대응하고, 다양한 매체가 생겨나는 중에 생길 수 있는 피해들이 있다. 어느 한 사람이 지목돼서 몹시 고통을 당하는 등의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거기에 관한 사회현상을 가지고 빨리 연구를 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기구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계속 이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남아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a)

V. 결론



이상의 전문가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언론조정·중재 제도의 30년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이 없지 않았으나 30년간의 노력으로 이제는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정정보도의 경우 ‘사실’에 대한 정의가 저널리즘적 차원과 법적 차원이 다른데, 지나치게 법적으로 엄격한 잣대만을 강조할 경우 자칫 언론의 위축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저널리즘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반론보도는 사건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전달해야 하는 저널리즘적 가치에 부합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피해구제 방법에 손해배상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손해배상액의 적절성, 절차적인 문제, 손해배상액의 산출 기준 등 법적 내용을 보완하거나 명확히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정권고제도가 언론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정권고 내용을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한편으로는 절차적인 측면의 문제점

을 제기하기도 하여, 시정권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포털사이트를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문가들은 개정 당시 논란의 중심이었던 포털사이트가 언론이냐 아니냐의 여부보다는 그 기능이나 영향력을 고려해서 포털사이트를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규정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고, 포털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등의 문제들이 언급되어 포털에 대한 규정의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섯째, 포털사이트처럼 향후 다른 뉴미디어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언론이 인격권 침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런 매체도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공간인 만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인격권 침해를 일으킨다면 이런 경우는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경우 포함대상을 선별할 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섯째,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중재위원의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연임 횟수를 증가시키거나 저널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들을 중재위원에 포함시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적은 수의 전문가 인터뷰의 내용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단일법 제정과 최근 개정을 통해 언론중재법이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법의 미비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법을 보완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롭게 언론중재법에 도입된 손해배상제도나 포털사이트와 관련하여 규정이 없

거나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언론중재제도의 피해구제 방법의 효과연구와 구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시정 권고를 강화해야 한다거나 효과적인 정정·반론·추후보도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도 뉴미디어가 기존 미디어와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정·중재 이후에 피해구제가 어떻게 행해졌고, 실제적인 구제 수준의 피해구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제로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피해구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경험적인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법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재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한 듯 하다. 중재위원의 전문성은 비단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이용자에 의해서도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이다(언론중재위원회, 2010). 그러나 중재위원은 법조계, 법학교수, 전직 언론인, 언론학 교수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전문성이 실제로 부재한 것보다 같은 언론보도라도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데서 오는 오해가 하나의 요인일 수 있을 듯 하다. 어쨌든 중재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언론중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과 관련된 만큼 매우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재위원의 전문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동시에 중재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 하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단순히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올바른 언론풍토를 정착하는데 있어 계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향후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할지 알 수 없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올바른 언론이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인이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인격권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뉴미디어 상에서의 윤리적인 논의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기회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법적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 지난 30년을 보더라도 많은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2005년 단일법 제정으로 언론중재법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내용들을 세밀히 검토하고, 법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가면서 내실을 다져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중재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책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 밝히고 있다. 언론중재제도의 최종 목적은 언론의 자유와 공적책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이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공적책임의 조화라는 보다 큰 비전 안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향후 30년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 김명진 (2010). 『미디어법』, 서울: 박영사.
- 양상승 (200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 94, 4-25.
- 언론중재위원회 (2010). 201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민족조사 보고서.
- 여상원 (2009).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뉴시스 비스 사업자와 기사제공인론사의 책임범위. 『언론중재』, 112, 6-21.
- 윤 경 (2005).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중재』, 95, 30-41.
- 황성기 (2005). 인터넷신문의 법제화와 언론중재. 『언론중재』, 95, 4-18.